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에 제2호 중 “가. 어음·매출채권을”을 “가. 어음·매출채권·주식·부동산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fsc0792 /2024-04-19 13:06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)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"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 1.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: 48시간 2.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. 어음·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: 1시간 나.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: 24시간	제23조(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)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---------- ----------:------ 2. ---------- ----------: ---------- ---------- 가. 어음·매출채권·주식·부동산을---------- -------: ---- 나. ----------: ------